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용〉

■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515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권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1. 13.
3.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Ⅲ. 검토의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용>

현행	개정안
第5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阻止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 1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第5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에 규정된 범죄 중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14.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죄 15.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범죄 중 제74조제1항 제2호의 죄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를 추가하고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중에서도 특히 전기통신을 활용하여 제작·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딥페이크¹⁾’ 기술을 활용한 범죄물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 등에 활용하려는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²⁾’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고, ‘전기통신³⁾’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1)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물을 말함.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의 감청에는 인터넷 회선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통신업체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다수의 회선 중 감청 대상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IP)을 특정하여 이를 통해 송·수신 중인 패킷을 중간에서 실시간 감청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위들 즉, 대상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과 주소, 메일과 메시지의 발송 내역 및 내용, 웹사이트의 주소 목록과 이동경로, 인터넷 전화, 인터넷 쇼핑 및 인터넷 बैं킹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이 포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될 수 있음⁴⁾.

종래 인터넷 회선 감청의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⁵⁾ 및 이에 따른 법률 개정(「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²⁶⁾ 신설)을 통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을 명시적으

4) 이정만, 『통신비밀보호법』, 박영사(2024), p.61

5) 헌법재판소, 2018.8.30. 2016헌마263

6)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로 허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대법원도 인터넷 회신 감청에 대해 그 허용성을 인정하고
있음⁷⁾.

- 불법 허위영상물이 일단 유포된 후에는 이를 회수하기 어려워 딥
페이크 대상의 인격권이나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신적인 피해 등
피해 범위가 막대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불법 허위영상물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유포하는 경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곤란하여 범죄 수사의 실효성에도 한계
가 있으므로,

불법 허위영상물이 유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여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등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해사자의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7)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7455]

로 불법 허위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통신제한조치 특히 인터넷 회선 감청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⁸⁾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 통신제한조치의 효용성, 딥페이크 기술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각 범죄별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개정안의 대상 범죄 중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는 병렬적으로 열거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이므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각 범죄별 법정형 및 딥페이크 기술·통신매체 이용 관련성

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성폭력처벌법				
조문	내용	법정형	딥페이크 기술	통신매체 이용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2년 이하 징역	△	○
제14조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및 촬영물의 반포·시청 등 처벌	7년 이하 징역		○
제14조의2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행위 및 제작물의 반포·시청 등 처벌	7년 이하 징역	○	○
제14조의3	몰래카메라 촬영물 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1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조문	내용	법정형	딥페이크 기술	통신매체 이용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5년 이상 징역	○	○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3년 이상 징역	○	
정보통신망법				
조문	내용	법정형	딥페이크 기술	통신매체 이용
제74조①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판매·임대 등 처벌	1년 이하	△	○

※ ○: 범죄의 성립을 위해 딥페이크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 범행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정형은 각 조문별 제1항 기준, 징역형만 표기

○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계류되어 있으므로, 어떤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연관 법률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2대 국회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illegible]

※ 법률안 발의 현황은 2025년 3월 기준